

2016년 상반기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소개 II

1.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6-8호)

〈사실관계〉

2011년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A(당시 중학생)는 이후 체육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2015. 5. 1. 운동 중 상해사고 발생. 보험회사 B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된 직업급수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

〈결정내용〉

일반인 입장에서 체육대학교 진학사실만으로는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알기 어려우며,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보험회사가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도수치료(물리치료사가 손으로 하는 안마 등)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2016-12호)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경추간판 장애로 인한 경추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하에 ○○병원에 통원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은 다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2015.8.29.~10.6. 기간 중 19회, 2015.10.7~12.23. 기간 중 22회). B보험회사는 2015.10.7.~12.23. 기간 중 시행받은 도수치료(22회)는 질병치료의 목적보다는 체형교정을 위한 외형개선 또는 질병의 예방차원이므로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결정내용〉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개선시키거나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면 도수치료는 당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이 없음

3.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2016-13호)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2004. 7. 14. 암진단보장특약 가입(5년 자동갱신), 2009. 7. 14. 1차 자동갱신, 2013. 9. 1.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 2014. 2. 26. 보험계약 부활, 2014. 7. 15. 난소암 진단을 받은 다음 암진단급여금 청구, B보험회사는 당해 특약에서 책임개시일 경과기간 1년미만 : 1,000만원(보험금의 50%), 책임개시일 경과기간 1년 이후 :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 부활시점에 책임이 개시되는데, A는 부활 이후 1년 이내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1,000만원(보험금의 5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내용〉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암특약 부활시에도 최초 계약체결시와 동일하게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보험금 감액기간(1년 미만 50% 감액)을 적용하여 암진단급여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4.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2016-4호)

〈사실관계〉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관리사무소를 피보험자로 하여 B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함. 동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위 균열을 통한 빗물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벽지 변색 등 피해 발생. A아파트관리소장은 동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B보험회사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A아파트관리사무소 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상 “동 관리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본건 사고는 동 관리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결정내용〉

A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부담하는데, 아파트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외벽의 균열·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벽방수공사를 하거나 수시로 하자를 점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동 아파트 입주자

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A아파트관리사무소가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효력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제3자인 입주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보험회사는 동 위·수탁관리계약(중과실 면책)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04 | E-Mail. leesh@shinkim.com |
| ● 정찬묵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35 | E-Mail. cmjung@shinkim.com |
| ● 백상미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26 | E-Mail. smbak@shinkim.com |